

무보증구매론 이용약관서

(중개 등에 따른 제3자구매기업 결제방식)(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귀 행]과 _____ (이하 “제3자 구매기업”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무보증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제3자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중개(유사거래 포함)하여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대금(이하 “거래대금”이라 함)을 판매기업이 수급하는 업무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조(목적)

이 약정은 은행과 제3자 구매기업 사이의 무보증구매론 계약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이 거래대금을 수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 “제3자 구매기업”이라 함은 특정 공간(방송, 매체, 온라인 몰, 백화점 등, 이하 “판매공간”)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기업 간의 물품 등의 거래를 중개(유사 형태 포함)하고 수취한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 “불특정 다수”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판매공간을 통하여 판매기업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다수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 “판매기업”이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의 판매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고 제3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 결제를 받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더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제3자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거래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제3자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을 말합니다.
- “제3자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거래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금 등”이라 합니다.
- “벤더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일반거래”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제3자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선입금가능일”라 함은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최초 시작일을 말합니다.
- “선입금가능비율”이라 함은 승인명세 건 별 판매기업이 선입금 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며, 제3자 구매기업 계약시 사전에 결정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 “전자적 방식”이라 함은 거래자료 전송, 선입금 등 무보증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 “무보증구매론”이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제3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매론을 말합니다. 다만, 제3자 구매기업과 일정액의 여신한도를 약정한 경우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는 판매기업이 선입금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제 3조(입금계좌의 지정)

판매기업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판매기업 본인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제 4조(승인명세의 취소, 변경 및 제한)

① 승인명세의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제3자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의 물품 등의 하자, 전산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을 이유로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하며, 승인명세의 판매기업, 승인금액,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등을 실행한 경우
나. 판매기업 입금일이 도래한 경우
- 제3자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매보호거래시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5.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은 강제로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승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 전승에 의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제3자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제3자 구매기업이 동 약정 관련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제3자 구매기업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4. 제3자 구매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5. 제3자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제3자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계약 상의 지급승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7.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이 발생하는 등,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8. 제3자 구매기업이 약정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제 6조(감액, 정지 조항)”에 의하여 은행이 제3자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9.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

제 5조(판매대금의 입금)

-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이 판매대금 입금업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1. 선입금신청시 : 선입금 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2. 벤더입금신청시 :
 - 가. 벤더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나. 판매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벤더입금 신청금액 전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고 판매기업의 계좌에서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출금하기로 합니다.
 3. 만기입금시 : 제3자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시 제3자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입금되지 않으며, 당일 이후에는 지급처리 되지 않고 익영업일에 자동으로 승인취소합니다.
 - 가. 제3자 구매기업 만기 결제 시 판매기업이 선입금을 받은 개별대출금을 우선 처리한 후 나머지 거래대금이 지급됩니다.
 - 나. 제3자 구매기업의 결제계좌에 결제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되며, 결제대금이 당일 지급할 거래대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제 대금에 달할 때까지 승인명세 건별 전액결제만 처리됩니다.
- ② 선입금은 승인명세 건별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이상 분할하여 선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판매기업이 선입금 신청 시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 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기로 하며, 이때 제출하는 “납품대금선입금신청서” 상의 인감이 본인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

제 6조(대출이자 및 수수료의 운영기준)

대금 입금시 발생하는 선입금 이자 및 각종 수수료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리 및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선입금 예상이자자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선입금이자자는 선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로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2. 무보증구매론 이용 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여러 건을 한번에 지급승인하는 경우에도 1건이 아닌, 지급승인 건별로 모두 징구합니다)

 - 가. 취급수수료 : 지급승인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제3자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제3자 구매기업이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벤더취급수수료 : 판매기업이 신청하는 벤더입금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벤더입금 건별 일천원(₩1,000)을 부담기로 하며, 벤더입금 신청 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선입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입금을 제한합니다.

1.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8조에 따라 지급보류가 등록된 경우
2. 제3자 구매기업이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3. 제3자 구매기업이 약정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제 6조(감액, 정지 조항)”에 의하여 여신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4. 제3자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선입금 금지가 등록된 경우
5.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을 받는 등, 제3자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무보증구매론 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자 구매기업과 계약한 여신(한도)금액 또는 선입금 가능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8조(지급보류)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제3자 구매기업에게 송달되는 경우, 제3자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한 후 제3자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2. 선입금 등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하여 지급보류 등록하는 경우

- 가. 승인명세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하기로 합니다.
- 나.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 시 제3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금 계정에 입금 처리하기로 합니다.
- 다. 미지급금계정에 입금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9조 (지연이자 수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제3자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제3자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거래대금을 거래대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제3자 구매기업이 거래대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무보중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 ② 제3자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거래대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제3자 구매기업이 거래대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무보중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제10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판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선입금 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제3자 구매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약정의 체결 및 변경)

- ① 무보중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효력)

- ① 이 약정서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 ②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 년 월 일

판매기업 : _____(인)

주 소 :



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거래신청서

(중개 등에 따른 제3자 구매기업 결제방식용)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1. 중심기업(제3자 구매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심기업코드

2. 판매기업 정보

(협력기업코드 :)

법인명 (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업태	종목	
주요취급품목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공공 및 기타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에 “V” 표시 합니다.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팩스번호	담당자이메일

4.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자서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
 - 법인사업자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 개인사업자 : 위임장(개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 공동대표인 경우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
-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판매기업) : _____(인)

